

에볼라 현장 대응 더욱 촘촘하게,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신속 개정

- 국내 유입 및 환자 발생 대비, 현장 대응 지침 개정·배포
- 입국자 관리부터 검사·이송까지 기관별 대응 절차 구체화
- 임산부·신생아 관리 등 현장 대응 기준 신설·보완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이하, ‘에볼라대책반’) 회의를 통해 바이러스성출혈열 국내 대응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및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유행에 따른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선언(5.17.)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에볼라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국내유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환자 발생 시 적시 대응을 위한 이번 개정 지침은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와 관련 학회*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 대한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이번 개정에서는 의심사례 인지 시점부터 대응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주요한 개정 사항은 ▲입국자 관리, ▲확진환자 이송 체계, ▲사망자 시신 처리 방법, ▲의사환자의 일상적 검사 시 생물안전 기준, ▲검체 채취 및 운송 시 유의사항, ▲환경 소독 방법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폐기물 관리, ▲임산부·신생아 관리, ▲자가 증상 기록지

(영문) 신설 등이다(붙임 1, 2 참고).

특히 입국자 관리부터 의사환자 검사, 확진환자 이송까지 대응흐름에 따른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하였으며, 국내 확진자 발생 시 치료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 및 치료하도록 명시하였다.

※ 확진 시까지 대응흐름(예시): A씨가 우간다 방문 후 발열 등 의심증상으로 1339로 신고 → 역학조사 결과 의사환자로 분류 → 관할 보건소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 후 검사 의뢰 → 질병관리청은 확인진단검사 실시 → 확진 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 및 치료

[주요 단계별 개정 사항]

단계	개정 전	개정 후
유증상 입국자 관리	기관별 역할 혼재	- 검역소 및 보건소 역할 명확화 - 기관별 입국자 관리방법 도식화(신설)
의사환자의 일상적 검사	의료기관 음압격리병동 내 일상적 검사(생화학·혈액학적 검사 등) 내용 부재	- 음압격리병동 내 별도 전용 검사실에서 수행 - 음압격리병동 내 별도의 전용 검사실이 없는 경우, 일상적 검사 생물안전기준(신설) ① BL3 기준 시설에서 검사 수행, 또는 ② 밀폐튜브형 자동분석기 등을 갖춘 BL2 기준 시설 내에서 강화된 개인보호구 착용* 후 일상적 검사 수행 가능 * KF94(N95) 등급 이상의 호흡보호구, 안면보호구, 전면형 실험가운, 이중장갑
확진환자 이송 및 관리	확진 시 이송 원착(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입원치료) 등 안내	- 확진환자 이송체계 및 세부절차 요약표(신설) - 확진 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됨을 명시 - 격리해제 시 검체채취·운송, 검사기관 명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을 폭넓게 반영하여 의심사례 신고부터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한층 구체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에볼라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지만,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주요 개정 사항을 지자체 등에 안내 및 교육하여 대응 업무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실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내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 <붙임> 1.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일부개정본)」 주요 개정 사항(요약)
 2.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일부개정본)」 전체 구성
 3.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2026.8.)」 표지 및 목차

담당 부서	감염병위기관리국 신종감염병대응과	책임자	과	장	민유정 (043-719-9100)
		담당자	역학조사관	김나영 (043-719-9123)	
			역학조사관	송다연 (043-719-9135)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일부개정본)
주요 개정 사항[요약]

구분	현행(2026.1)	개정 후(2026.8)
입국자 관리	[입국 시 유증상자 조치사항] 사례분류 결과에 따른 검역관 역할 명확화	
	(신설)	· (의사환자) 병상배정 요청 및 환자 이송 등 · (사례 미해당) 잠복기 내 주의사항 안내 등 보건 교육 실시
	[입국 시 유증상자 조치사항] 보건소 역할 명확화	
	(신설)	· (의사환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운송 및 검사의뢰
의심 시 대응	[의사환자의 일상적 검사] 생물학적 안전 기준 추가	
	· 의사환자의 간호, 치료를 위한 생화학, 혈액학적 검사 등 일반 검사 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공학적 안전설비가 갖춰진 장비 및 시설 내에서 작업	· 의사환자의 간호 및 치료를 위한 일상적 검사는 음압격리병동 내 별도의 전용 검사실에서 수행 · 음압격리병동 내 별도의 전용 검사실이 없는 경우, BL3 기준 시설 내 또는 생물안전작업대, 밀폐형 원심분리기 및 멸균기를 갖춘 BL2 기준 시설 내에서 검사 수행
	[검체 채취]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추가	
	(신설)	·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후 최소한으로 채혈 · 환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채혈 비추천
확진 시 대응	[확진환자 이송] 이송체계 및 세부절차(안) 추가	
	(신설)	· 환자 이송 결정 후 배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명시
	[확진환자 격리해제] 검체 운송 및 검사기관 명시	
	(신설)	· 확진환자의 격리해제를 위한 검사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운송 및 검사의뢰 · 질병관리청에서 검사 수행
	[사망자 관리] 시신 처리 방법 구체화	
	· 시신 이송 또는 처리 시 개인보호구 착용 · 시신 세척, 탈의 등 금지 · 장례방법은 화장이 원칙	· 사망 장소에서 시신을 시신백에 넣어 밀봉 · 시신안치소 담당자는 개인보호구 착용 · 시신은 가능한 운송을 최소화
임산부 및 신생아 관리	[임산부 관리] 임산부 대상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리 방법 추가	
	(신설)	· 임신, 분만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산부 진료 시 권고사항 등을 추가 * (참고) CDC. Clinical Guidance for Ebola in Pregnant Women(2024.5.3.)
	[신생아 관리] 신생아 대상 임상 안전 조치사항 추가	
	(신설)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또는 확진환자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특별 관리 및 임상 안전 조치 추가 * (참고) CDC. Clinical Guidance for Neonates Born to Patients with Suspected or Confirmed Ebola Disease (2025.1.30.)

영역	구성 및 항목
제1장 총론	I. 대응 개요, II. 의심 시 대응, III. 확진 시 대응, IV. 실험실 검사
제2장 각론	바이러스성출혈열(6종): I. 바이러스성출혈열 II. 에볼라바이러스병, III. 마버그열, IV. 라싸열, V. 크리미안콩고출혈열, VI. 남아메리카출혈열, VII. 리프트밸리열 1. 개요, 2. 발생 현황, 3. 역학적 특성, 4. 임상적 특징, 5. 실험실 검사, 6. 치료, 7. 예방, 8. 질병개요(요약표), 9. 질의응답(Q&A)
제3장 부록 (총 23개 항목)	1. 관련 법령, 2. 개인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법, 3. 환자 이송, 4. 오염장소별 환경소독 방법, 5. 폐기물 관리, 6. 입국자·접촉자 안내 문자 7. 항공기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대응, 8. 자가격리·입원치료 방법 및 절차, 9. 의료기관 감염관리, 10. 집중관리병원 관리, 11. 경유 의료기관 등 관리, 12. 의사환자 발생 시 검사의뢰 지침(의료기관용), 13. 의심사례 신고 시 점검 목록(보건소용), 14.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심 시 말라리아 감별진단 치료, 15. 위험소통, 16. 음압격리병상 시설 기준, 17.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현황, 18. 공동사용가능 국고지원 장비 보유 현황, 19. 통역서비스, 20. 공동격리 정의 및 절차, 21. 임산부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리(신설), 22. 신생아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리(신설), 23. 감염병별 생물안전 개요(신설)
제4장 서식 (총 15개 항목)	1. 유행/위험지역 입국자 위험평가 및 모니터링 기록지, 2. 감염병 발생·사망 신고서, 3.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4. 바이러스성출혈열 감염병별 기초역학조사서, 5. 바이러스성출혈열 접촉자 명단 조사 양식, 6. 바이러스성출혈열 접촉자 시스템 관리 양식, 7. 바이러스성출혈열 관련 입국자·접촉자 상황발생보고서, 8. 바이러스성출혈열 자가 증상기록지, 8-1. 자가 증상 기록지(영문)(신설), 9. 입원·격리 통지서, 10. 입원·격리 사실확인서, 11. 격리통지서(검역소용), 12. 검체 시험의뢰서, 13. 소독시행명령서(검역소용), 14. 퇴원환자 안내문(예시), 15. 시도 대책본부 추진상황 일일보고서

표지	목차(총론 및 각론)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에볼라바이러스병·마버그열·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남아메리카출혈열·리프트밸리열 2026. 8. 질병관리청	목차 Contents 제1급감염병 기본 대응 방향 제1장 총론 I.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 개요 II. 의심 시 대응 III. 확진 시 대응 IV. 실험실 검사 관리 제2장 각론 I. 바이러스성출혈열 II. 에볼라바이러스병 III. 마버그열 IV. 라싸열 V. 크리미안콩고출혈열 VI. 남아메리카출혈열 VII. 리프트밸리열
목차(부록)	목차(서식)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관리지침 제3장 부록 - 국내 감염병 대응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개인보호구 종류 및 사용법 - 환자 이동 - 오염장소별 환경소독 방법 - 폐기물 관리 - 입국자·검독자 안내문자 - 항공기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대응 - 자기치료 및 입원치료와 방법 및 절차 - 의료기관 감염관리 - 집중관리병원 관리(의료기관 유형 시 조치) - 경유 의료기관 등 관리 - 의사환자 발생 시 검사의학 지침(의료기관용) - 의심사례 신고 시 정검 목록(보건소용) -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심 시 말라리아 감염전단 치료 - 위험소통 - 유행격리병상 시설 기준 -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현황 - 공동사용가능 국고지원 장비 보유 현황 - 통역서비스 - 공동격리 정의 및 절차 - 임신부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리 - 산생아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리 - 감염병별 생물안전 개요	목차 Contents 제4장 서식 - 유행/위험지역 입국자 상황평가 및 모니터링 기록지 - 감염병 발생·사망(검안) 신고서 -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 바이러스성출혈열 감염병별 기초역학조사서 - 바이러스성출혈열 접촉자 명단 조사 양식 - 바이러스성출혈열 접촉자 시스템 관리 양식 - 바이러스성출혈열 관련 입국자·검독자 상황발생보고서 - 바이러스성출혈열 자가 증상기록지 - 입원·격리 통지서 - 입원·격리 사실확인서 - 격리통지서(검역소용) - 검체 시험의뢰서 - 소독시행명령서(검역소용) - 환원환자 안내문(예시) - 시도·대행본부 추진상황 일일보고서

☞ 질병관리청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 확인 또는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